



제7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3. 12. 19. (금요일), 15:00~18:30
- 장 소 : 덕수궁 회의실
- 출석위원 : 임돈희, 김영운, 김운미, 박성실, 박형철,
이영희, 인묵, 전경욱, 최성자, 최응천,
함한희(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3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공개
4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공개
5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비공개
6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인정	공개
7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공개
8	2015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대상 신청종목 선정	공개
9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지정 사전협의	공개
10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인정 사전협의	공개

【검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5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재검토	비공개
6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조사 관련 조사위원 위촉 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줄다리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관련 전승공동체 현황 보고	비공개
2	‘궁중의식의 전승실태 및 목록작성 학술연구’ 결과보고	비공개
3	‘중요무형문화재 무용 개인종목 관리방안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	비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7-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 김철주를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3.11.15~)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 지정일 : 1970. 7. 22.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김철주(남, '33년생, 조각 / '89.12. 1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남경숙(여, '50년생, 조각 / '96. 2. 1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일시/장소 : 2013. 9. 11.(수)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 확인자 : 강경보 사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김철주(남, '33년생/ '89.12. 1 보유자 인정)

(3) 확인결과

- 김철주 기능보유자는 거동이 가능하나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후진 양성을 원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예고사항(관보 제18141호 / 2013.11.15 / 문화재청 공고 제2013-289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소
제35호 조각장	명예보유자 인정	김철주	남	1933.8.25	조각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9-112 과학원아파트 100-106

○ 예고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김철주는 보유 기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평생 노력을 다해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조사 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김철주를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이영수를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3.11.15~)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 지정일 : 1971. 2. 24.
- 전승자 현황
 - 보유자(4명) : 고흥곤(남, '51년생, 현악기 제작 / '97. 3.24 인정)
이영수(남, '29년생, 현악기 제작 / '91. 5. 1 인정)
이정기(남, '57년생, 북 제작 / '12.11.20 인정)
김현곤(남, '35년생, 편종·편경 제작 / '12. 7.23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김영렬(남, '50년생, 현악기 제작 / '04. 3.20 선정)
이동윤(남, '56년생, 현악기 제작 / '95. 8. 1 선정)
윤중국(남, '61년생, 북 제작 / '95. 8. 1 선정)
윤 신(남, '63년생, 북 제작 / '97. 8. 1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일시/장소 : 2013. 9. 11.(수)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 확인자 : 강경보 사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이영수(남, '29년생/ '91. 5. 1 보유자 인정)

(3) 확인결과

- 이영수 기능보유자는 거동이 가능하나 고령으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 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후진 양성을 원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예고사항(관보 제18141호 / 2013.11.15 / 문화재청 공고 제2013-289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소
제42호 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이영수	남	1929.12.25	현악기 제작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2길 26(한남동)

- 예고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이영수는 보유 기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평생 노력을 다해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조사 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이영수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3.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 제안사항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에서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고('13.11.15.~),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수륙재(水陸齋)
- 신청자
 - (가) 백운사 아랫넛수륙재보존회(대표 : 김차식(석봉))
 - 경상남도지사 추천(2007. 11)
 - (나)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대표 : 김종민(월명))
 - 강원도지사 추천(2011. 1)
 - (다) 진관사 수륙재 보존회(대표 : 계호)
 - 서울특별시시장 추천(2011. 9)

(2) 추진경과

- 2012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총원 조사 계획에 포함('12.1월)
- 수륙재 종목 지정가치 서면조사 실시('12.4월)
- 2012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2.5.18) 검토
 - 수륙재의 신규종목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함
- 지정조사 대상 3개 사찰에 대한 조사계획 통지('12.5.31)
- 현지조사 실시('12.10.)

- 조사대상 : 삼화사 국행수룩대재보존회
백운사 아랫녘 수룩재 보존회
진관사 수룩재 보존회
- 조 사 일 : 2012.10.19 ~ 21 (3일간/삼화사)
2012.10.13. ~ 14 (2일간/백운사)
2012.10.13. ~ 14 (2일간/진관사)
- 조사방법 : 현지조사(참관 및 인터뷰), 필요시 추가 현지조사 실시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 검토('13.3.8.)
 - '수룩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지정명칭	구분	보유단체	설립연월	주소
수룩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진관사국행수룩재 보존회	2002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
		삼화사국행수룩재 보존회	2009.3.31.	강원 동해시 삼화동 산176

- 관보공고(관보 제17972호/ '13.3.14./문화재청 공고 제2013-99호)
- 지정예고 결과 : 이의제기 접수(6건)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심의('13.5.24)
 - 보류함. 사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대상 3개 사찰을 재조사하여 검토토록 함
 - 문화재위원회 결과를 조사대상 3개 단체에 통지('13.6.3.)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 검토('13.7.12.)
 -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접수(5건)됨에 따라 이를 검토
 - 검토결과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 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토록 함.
- '수룩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이의제기 검토 소위원회('13.8.22)
 - 조사자 중 진관사와 관련된 제척사유자는 □□□과 □□□이고, 삼화사와 관련된 제척사유자는 □□□임.
 - 따라서 상기 제척자가 2012년 10월에 실시한 수룩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에 심사자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실시함.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 보고('13.9.13)
 -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원안 접수).
- 현지 재조사 실시('13.10월)
 - 조사자 : 관계전문가 9명

- 조사대상 : 마산 백운사,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
- 조사일시/장소 : 2013. 10. 10~12(3일간) / 마산 백운사
2013. 10. 12~13(2일간) / 서울 진관사
2013. 10. 18~20(3일간) / 동해 삼화사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 검토('13.11.8)
 - '수록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 지정명칭은 수록재로 하며, 세부 지정명칭을 다음과 같이 함.
삼화사 수록재 : 삼화사 국행수록대재보존회
진관사 수록재 : 진관사 수록재보존회
백운사 수록재 : 백운사 아랫녘수록재보존회
 - ※ 단 백운사 수록재는 지방 무형문화재(경남 제22호 불모산영산재)와 동일한 단체로 판단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예고 기간 중에 보유단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최종 심의토록 함.

(3) 예고사항(관보 제18141호/2013.11.15./문화재청 공고 제2013-289호)

○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단체명	성별	설립년월일	기예능	주소
수록재	종목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삼화사 국행수록대재보존회	-	2009.3.31.	수록재	강원 동해시 삼화로584
		진관사 국행수록재보존회	-	2010.5.13.	수록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354
		백운사 아랫녘수록재보존회	-	2002.3.1.	수록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489

○ 예고사유

- 수록재는 조선초기부터 온 수록의 고흠 천도를 위하여 행해졌던 불교 의례로 조선왕조실록에 설행기록이 나타나는 등 역사성과 예술성이 높으며,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대중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낮재·밤재 합설이라는 의례상 특수성을 지니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백운사아랫넉수륙재보존회는 수륙재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우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수륙재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4) 예고결과 : 이의제기 접수(4건)

- ※ 보유단체 중복 문제에 따라 경남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영산재 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조교, 이수자가 총 사퇴하고 회의록과 자퇴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함

라. 검토의견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종목인 ‘백운사 수륙재’에 대하여 지난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한 바 있음.
 - 백운사 수륙재는 지방 무형문화재(경남 제22호 불모산영산재)와 동일한 단체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예고기간 중에 보유단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최종 심의토록 함.
-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는 ‘불모산영산재보존회’의 보유자, 보유자후보, 이수자 전원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경상남도 문화재관리조례」에 의거 관계 전문가의 검토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유자 인정 해제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왔음(경상남도 문화예술과-20941호 / ‘13.11.28)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복 문제를 행정적으로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금번 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백운사 수륙재를 신규종목으로 조건부 지정하고, 경상남도가 상기 보유단체 중복 문제를 행정적으로 완료한 시점 이후에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신규종목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 제125호 삼화사 수륙재 :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
-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 : 진관사 국행수륙재보존회
-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 : 백운사 아랫녘수륙재보존회

※ 단, 백운사 수륙재는 경남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영산재 전승자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행정절차 완료 후 차기 회의에서 최종 심의토록 함. 아울러, ‘백운사 아랫녘수륙재보존회’의 보유단체 명칭을 ‘아랫녘수륙재보존회’로 변경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0명, 제척 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3. 7.12)에서 ‘채화칠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이의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3.7.19~)하고, 동 기간 중 접수된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자 : 박경옥(남, ‘57년생 / 개인 신청)
최종관(남, ‘51년생 / 서울 신청)
양유전(남, ‘50년생 / 강원 신청)
이의식(남, ‘54년생 / 전북 신청)
- 신청종목 : 채화칠장
 - ※ 채화칠장 : 옷칠한 기물에 안료를 섞어 다양한 색과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

(2) 추진경과

- 2008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제3차 회의(‘08.7.25) 심의 “지정가치 인정, 조사대상자 전국 공고 발굴 필요”
-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08.8.19 / 시·도 추천 3명, 개인 신청 2명)
- 신청서류 심사(‘08.10.31 / 신청자 모두를 기량평가 대상으로 함)
- 현지조사 실시(‘09.6.24~7.5)
- 공예 관련단체 건의서 제출(‘09.10.19)

“현지조사자 4인중 3인이 ○○○협회 전 회장이며, 조사대상자 1인이 동 협회 교육위원이므로 심사 부당”

- 칠공예 관련단체 확인('09.11.11)
 - 조사위원 재구성 관련 조사위원 추천 의뢰('10.2.1 / 한국미술사학회)
 - 2011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에서 조사위원 추천 심의('11.12.9)
 - 2012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에서 조사방향 검토('12.11.9)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규정」의 조사항목에 의하여 현지조사 재 실시
 - 신청자 공방 현지조사('12.12.17~18 / 서울, 원주 등 신청자 공방)
 - 기량심사('13.1.14~19 / 전통문화교육원)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 지정 예고 검토('13.3.8)
 - 양유전, 이의식, 최종관의 완성 작품을 확인한 후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 검토
 - 미완성 공예품 추가 제작('13. 4.22~5.1 / 전통문화교육원 / 최종관 불참)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지정 예고 검토('13.5.24)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
 - 2013년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소위원회 회의 지정 예고 검토('13.6.26)
 - 접수 편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기량이 가장 우수한 이의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할 것을 권고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 지정 예고 검토('13.7.12)
 - 채화칠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이의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 이의제기 사항 보고('13.9.13)
 - 채화칠장 관계전문가 검토 회의('13.10.29)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 전문가 검토결과 보고('13.11.8)
- (3) 이의제기 및 지적사항
- 청장과의 대화방(4건), 국민신문고(2013. 7.30~현재, 30여건) 접수
 -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 지적사항

구 분	지적사항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화칠 보유자 인정관련 편법과 부실의혹('13.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문 출신 조사위원 구성 - 특정인은 출퇴근을 용인하였고, 대면 평가 진행 - 조사대상자가 조사자의 전시회 협조 경력 - 추가완성기간 10일 부여 ○ 소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모 위원과 같은 동문 5인 소위원회 구성 ○ 전통기법이 아닌 일본식 기법 사용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화칠장 심사위원 일본기법 문제제기('13.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씨가 구사하는 방법은 일본의 고시회와 중국 문헌에 나오는 방법으로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응용되는 기법임 ○ 인간문화재와 홍익대 '파워' ('13.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홍익대 사제지간 - 소위원회 7명 중 5명도 홍익대 출신

라. 의결사항

- 부결함
 - 채화칠기 제작기법의 전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전승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채화칠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부결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5.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6.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전수교육조교 김봉순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3.11.15.~)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 지정일 : 1980. 11. 17.
-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1명) : 김병옥(‘31년생, 여 / 약사, ’12.2.2 인정)
 - 보유자 : 없음
 - 전수교육조교(3명) : 김봉순(‘36년생, 여 / 만신, ’90.10.10. 선정),
신성남(‘56년생, 남 / 큰소, ’05.9.23. 선정)
한애옥(‘54년생, 여 / 만신, ’05.9.23.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 전승자 총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현지조사 실시(‘13.9.27.)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
 - 김봉순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3) 예고사항(관보 제18141호/2013.11.15./문화재청 공고 제2013-289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70호 양주 소놀이굿	보유자 인정	김봉순 (金鳳順)	여	1936.3.6.	만신	경기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32-5(유양동)

○ 인정예고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김봉순은 양주소놀이굿의 만신으로 전승기량이 우수하여 양주소놀이굿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4)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김봉순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7.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해제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박용태의 보유자 인정해제를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3.11.15.~)하고, 보유자 인정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1964.12.7. 꼭두각시놀음 지정, 1988.8.1. 명칭변경)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박용태('44년생, 남 / 꼭두각시놀음, 덧쇠기, 풍물, '02.4.25.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진명환('48년생, 남 / 소고, '02.2.5 선정)
 - 보유단체 : 남사당놀이보존회('86.11.1 인정)

(2) 사건경과

- 감사원이 남사당놀이 보존회(사단법인 남사당) 비위 의혹을 접수하고,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에 이첩(2012.8.22)
- 해외공연비 사기 및 이수증 부정발급에 대한 검찰고발(2012.10.18)
- 남사당놀이보존회 단체 및 사건 연루 전승자(박용태, 남기문, 지운하)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2012.12월)
- 검찰약식기소(2013.6월) 및 정식재판(2013.9.12. 선고)
-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13.9.13) 보고에 따라 해당 사건 선고 후 남사당놀이보존회 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지급 재개(2013.9월)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13.11.8)
 - 박용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함
 - 남기문, 지운하의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함

(3) 예고사항(관보 제18141호/2013.11.15./문화재청 공고 제2013-289호)

- 인정해제 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박용태 (朴龍泰)	남	1944.4.20.	꼭두각시 놀음, 덧뵈기, 풍물	서울 마포구 동교동로3길 26-5 (망원동, 엘림파크) 302호

- 예고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박용태는 전통 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 예고함.

(4) 예고결과 : 이의제기 있음(1건)

라. 의결사항

- 박용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8.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 신청종목 선정

가. 제안사항

2015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 신청종목 선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 신청 종목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1년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1.1.14)
 - 2012년도 유네스코 심사 대상 종목으로 풍물놀이(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가야금산조(병창 포함), 대금·피리정악(대취타 포함), 갯일(망건장, 탕건장 포함)선정
- 2011년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11.9.2)
 - 2012년도 심사대상 종목의 명칭을 일부 조정
 - 정선아리랑→아리랑, 가야금산조→가야금산조 및 병창
 - 심사대상 종목 및 추천 순위 결정
 - ①아리랑 ②풍물놀이 ③가야금산조 및 병창 ④대금·피리 정악 ⑤갯일
-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1.10.14)
 - 2013년도 심사 대상 종목은 다음과 같이 함
 -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 종목을 확대토록 함
 - 김치, 연등회, 탈놀이
 - * 기 신청종목인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대상을 확대하여 탈놀리로 함
- 2013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 우선순위 제출(무형문화재과→국제교류과)(2012.8.17)
 - 김치와 김장문화

-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13.3.8)
 -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은 '풍물놀이'로 함
 - 추후 '해녀문화'를 포함하여 단독등재 신청 종목을 검토토록 함.
 - ※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13.9.4) 결과, 등재 신청 명칭을 '풍물놀이'에서 '농악'으로 변경토록 함

(2) 2015년 등재 대상 신청종목 선정

- 주요 검토 대상종목
 - 연등회(2011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에서 검토)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제출('12.3월)
 - *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2012.4.6)
 - 탈놀이(2011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에서 검토)
 - 다국 간 공동등재 모색 중
 - 해녀문화(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에서 검토)
 - 추후 '해녀문화'를 포함하여 단독등재 신청 종목을 검토토록 함.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5년도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건의('13.10.16)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해녀문화의 국내외 전승환경

<국내 전승환경>

- 해녀문화 전승 보존 근거 마련
 -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정('09.11월)
 -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구성('11.7월)
- 제주해녀의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예비목록) 선정 ('12년)
- 제주 이외의 해녀 관련 단체 현황 파악('13.9월)
 - (사)거제시 나잠회, (사)울산광역시 나잠회, 신안군 각 마을별 어촌계 등 3곳

<일본의 등재 추진 상황>

- 일본의 미에현에서 아마(해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중
 - 해녀진흥협의회 설립('12.6월), 해녀보존회 설립('13.5월)
 - 2013년 현급 무형민속문화재 지정 추진, 2014년 국가 중요무형민속 문화재 지정 추진,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음

라. 검토의견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 신청 종목은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국내외적인 등재환경을 고려하여 유네스코에 기 제출된 목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목록을 재선정할 필요 있음.

마. 의결사항

- 2015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 신청종목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선정하고, 향후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산 명칭을 조정토록 함.
 - 제주해녀문화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며, 최근 일본의 해녀 등재 추진 등 국내외적인 환경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9.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지정 사전협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협의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경기도에서 ‘석장’(석 구조물)에 관한 시·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진 중인 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 지정일 : 2007. 9.17.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이의상(남, ‘42년생, 석 구조물 / ’07. 9.17 인정)
 - 이재순(남, ‘56년생, 석조각 / ’07. 9.17 인정)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 개요

- 신청종목 : 석장(석 구조물)
- 보유자 인정대상자(1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전승지)	기능
임동조	남	1955.8.17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로 114, 103-901(현대APT)	석 구조물

- 지정 배경 및 필요성(경기도 문화재위원회 / 2013. 8.30)
 - 급변하는 현시대에 전통기법을 사용하여 석(石) 소재에 역사성과 예술성 등을 표현하는 석공이나 장인들의 기능을 계속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이 시급하며, 현재 경기도의 석장(도지정 제42호)

- 으로는 ‘석조각’ 보유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석구조물’은 미지정 상태임.
- 임동조는 석장 보유자로서의 충분한 기량과 전승 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기능, 계보, 전승공간 등 여러 측면에서 보유자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검토의견

- 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보유자와 중복되지 않음

마. 의결사항

-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이견 없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10.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인정 사전협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충청북도서 ‘소목장’에 관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추진 중인 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 지정일 : 1975. 1.29.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박명배(남, '50년생, 소목 / '10. 4.22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김금철(남, '55년생, 소목 / '82. 4. 1 선정)
조화신(남, '62년생, 소목 / '96. 2. 1 선정)

(2)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개요

- 신청종목 : 소목장(사찰가구 제작)
- 보유자 인정대상자(1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전승지)	기능
김광환	남	1952.10.9	청원군 미원면 가지기암길 5-6	사찰가구 제작

- 지정 배경 및 필요성(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 2013.11.21)
 - 김광환은 40여년간 사찰가구 분야의 소목 장인으로 기능이 우수하며, 전통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사라져 가고 있는 사찰가구

제작 전통기법의 맥을 잇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장인으로 전
승자를 육성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보유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라. 검토의견

- 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와 중복되지 않음

마. 의결사항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인정에 이견 없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7-011

1.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분야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분야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 지정일자 : 1964.12.24.
- 전승자 현황
 - 보유자(8명) : 남봉화(’35년생, 여 / 수궁가, ’12. 4. 6 인정),
성관례(’35년생, 여 / 춘향가, ’02. 2. 5 인정),
신영희(’42년생, 여 / 춘향가, ’13. 3.12 인정),
성창순(’34년생, 여 / 심청가, ’91. 5. 1 인정),
박정자(’27년생, 여 / 홍보가, ’02. 2. 5 인정),
송순섭(’39년생, 남 / 적벽가, ’02. 2. 5 인정),
정철호(’23년생, 남 / 고법, ’96. 9.10 인정),
김청만(’46년생, 남 / 고법, ’13.3.12 인정)
 - 전수교육조교(14명) : 김영자(’51년생, 여 / 수궁가, ’91. 5. 1 선정),
정영미(’58년생, 여 / 수궁가, ’95. 8. 1 선정),
정옥향(’52년생, 여 / 수궁가, ’01.12.27 선정)

조동규('45년생, 남 / 수공가, '88. 8. 1 선정),
 박봉례('31년생, 여 / 춘향가, '85. 3. 1 선정),
 김수연('48년생, 여 / 춘향가, '07. 3.12 선정),
 이순자('52년생, 여 / 심청가, '95. 5. 1 선정),
 강정자('42년생, 여 / 적벽가, '93. 8. 2 선정),
 김양숙('64년생, 여 / 적벽가, '94. 4. 1 선정),
 김일구('40년생, 남 / 적벽가, '92. 7. 1 선정),
 박시양('62년생, 남 / 고법, '01.12.27 선정),
 박정철('72년생, 남 / 고법, '08.12.30 선정),
 정회천('57년생, 남 / 고법, '85. 7. 1 선정),
 장덕화('42년생, 남 / 고법, '92. 7. 1 선정)

(2) 조사개요

- 일 시 : 2013.11.12(화) 14:00~
 - 조사자 사전회의 : 14:00~15:00
 -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 15:00~
- 장 소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6명
- 조사대상자(3명) : 권하경('68년생, 여 / 2008.12.19 이수),
 김순자('45년생, 여 / 2003.11.24 이수),
 정유진('45년생, 여 / 일반전승자)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 지표(개인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조사대상자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미흡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 지정일자 : 1971. 1. 8.
-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1명) : 이양교(‘28년생, 남 / ’13. 3.12 인정)
 - 보유자 : 없음
 - 전수교육조교(3명) : 김호성(‘43년생, 남 / ’87. 1. 5 선정),
황규남(‘47년생, 남 / ’89.12. 1 선정)
이준아(‘60년생, 여 / ’08.12.30 선정)

(2) 조사개요

- 일 시 : 2013.11.21(목) 12:00~
 - 조사자 사전회의 : 12:00~13:00
 -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 13:00~
- 장 소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5명) : 김병오('62년생, 남 / 1986.4.1 이수)
 김종옥('38년생, 남 / 1997.7.7 이수)
 문금자('65년생, 여 / 2007.1.26 이수)
 문 현('58년생, 남 / 1991.7.1 이수)
 석정숙('33년생, 여 / 1996.5.18 이수)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 지표(개인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조사대상자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미흡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3.7.12)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인정 예고 건은 굿 현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 지정일 : 1990.10.10.
- 전승자 현황
 - 전수교육조교(2명) : 장영근(‘45년생, 남 / 약사, ’06.2.9. 선정), 오진수(‘47년생, 남 / 화랭이, ’06.2.9.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 전승자 층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현지조사 실시(‘13.7.1.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풍류)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3.7.12) 검토
 - 보류함.
 - 굿 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검토토록 함.
- 현지 추가조사 실시(‘13.11.10. / 경기도 부천 장말도당굿)

(3) 보유자 인정 기량평가

- 조사자 : 관계전문가 4명
- 조사대상자 : 전수교육조교 2명

- 조사일시 : 2013.7.1. 13:00~16:00
- 조사장소 :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극장(서울 강남구 삼성동)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단체)의 지표항목
- 조사방법 : 실연에 대한 기량평가 및 이론·전승 관련 면담
- 조사제외 항목
 - 지표제외 항목 : 1-1-3.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1-1-4.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3-1. 보유단체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4) 현지 추가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4명
- 조사대상자 : 전수교육조교 2명
- 조사일시 : 2013.11.10. 09:00~17:00
- 조사장소 : 부천 장말도당 및 중앙공원 일대(경기 부천시 중동)
- 조사방법 : 실연에 대한 기량평가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조사대상자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미흡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 인정 예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5.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계획 재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6.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조사 관련 조사위원 위촉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7-017

1. ‘줄다리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관련 전승공동체 현황 보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궁중의식의 전승실태 및 목록작성 학술연구’ 결과보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중요무형문화재 무용 개인종목 관리방안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